

■ 경기아트센터 인사규정

제1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.<개정 2013.1.4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개정 2016.12.29>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,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 아트센터로부터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10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
11.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
12.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